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46
----------	------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민형배 · 이소영 · 이광재
김성환 · 이원택 · 박용진
신정훈 · 이용빈 · 김경만
정필모 · 김영배 · 유정주
김승원 · 허 영 · 양이원영
장경태 · 이해식 · 이수진(비)
진성준 · 양경숙 · 강득구
양정숙 · 우원식 · 박홍근
강준현 · 위성곤 · 김성주
윤준병 의원(28인)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생태적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멸종하는 종은 인류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삼고 그린뉴딜에 대한 전면적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린뉴딜에 있어 금융은 혈관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호주, 영국, 미국, 두바이, 노르웨이 등에서 기후금융의 초기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공사들이 녹색금융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금융안정화위원회(FSB),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표준화기구(ISO),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감독기관들의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등은 이미 전 세계적인 녹색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분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분류체계를 금융감독지침에 포함하는 등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사들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전사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DP 경제규모 10위권에 어울리지 않게 녹색금융에 있어서만은 개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우려하며 뛰어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이 법을 만듭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녹색금융 촉진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안 제3조).

-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여 녹색금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후·환경 관련 위험이 가져올 손실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녹색금융은 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관련 금융행위에 따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제공할 것
-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금융지원을 축소할 것(다만, 본 조항의 적용은 녹색분류체계 공표 시점까지 유보된다)

다. 금융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금융기관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기후 및 환경에 대한 금융지원에 수반되는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환경·사회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안 제8조).

마. 금융기관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 또는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활동을 검토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금융서비스 제공 규모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기후위기 대응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서 한국녹색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함(안 제11조부터 제46조까지).

사. 공사는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음(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안번호 제5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금융 촉진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위기를 말한다.
2. “녹색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분야로서 기후·환경관련 위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및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탄소중립기술·탄소중립산업 관련 분야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

- 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분야
- 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분야
-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9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관련 분야
- 바.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자금 공급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3. “책임투자”란 기업이나 사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녹색분류체계”란 국가의 환경적 순편익 달성을 위해 수반되는 경제활동과 금융행위를 분류한 것을 말한다.
6. “녹색보증”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민간의 투자와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제2조제4호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여 녹색금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2.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후·환경 관련 위험이 가져올 손실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3. 녹색금융은 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관련 금융행위에 따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제공할 것
4.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금융지원을 축소할 것(다만, 본 조항의 적용은 녹색분류체계 공표 시점까지 유보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금융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녹색금융 촉진

제5조(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① 금융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여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3.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과제
4. 그 밖에 녹색금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공표하고 이를 3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조(녹색보증 계정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제11조에 따른 공사에 녹색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이 계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계정의 운용수입

③ 관리기관과 공사는 녹색보증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사업이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중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녹색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계정 출연금에 사용할 수 있다.

⑤ 녹색보증 계정에 대한 출연금·보증수수료 등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책무 등) ① 금융기관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후 및 환경에 대한 금융지원에 수반되는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환경·사회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③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금융기관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 또는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활동을 검토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금융서비스 제공 규모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채권 발행의 특례)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녹색채권
2.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사회적채권
3. 그 밖에 책임투자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② 제1항의 채권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및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은 외부인증 등 제1항의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및 민간과 협의하여 녹색 및 사회적 채권 원칙을 제정 및 공표해야 한다.

제3장 한국녹색금융공사

제11조(한국녹색금융공사의 설립) 기후위기 대응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서 한국녹색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2조(성격 등)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공사에게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소 및 등기) ① 공사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의 국내 사무소, 지사, 출장소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 내에 위치해야 한다. 해외 사무소, 지사, 출장소 설립 시 이와 같은 기준에 준하는 건물 내에 위치해야 한다.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4. 금융기관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 국제기구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항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 출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제1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녹색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해산)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제37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예산·결산, 적립금의 자본전입 및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 지명하는 각 1명
3. 기후위기, 녹색투자, 정책금융, 지속가능발전이나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추천하여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이상(다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각 1명은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 가. 기후위기, 녹색금융, 정책금융,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에 금융기관, 국제기구, 시민단체 소속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나. 기후위기, 녹색금융, 정책금융,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후위기, 녹색금융, 정책금융,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후위기, 녹색금융, 정책금융,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위원회의 2명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⑥ 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감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들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공사업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사장에 대한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⑧ 위원회는 위원회의 중요한 심의·의결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항별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사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함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조치 내용의 취소,

수정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달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직원의 임면)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사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하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하고,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

원회가 임면한다.

⑤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환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공사의 감사는 금융 또는 환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4조(사장추천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을 동률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파견 등) ①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그리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④ 파견직원이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으면 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을 보좌하고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7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0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1조(대리인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제19조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금의 대출 및 이차보전용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신용위험의 유동화
5. 사업의 발굴·추진·금융자문
6. 녹색금융·기후위기 관련 국제협력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 및 배출권에 대한 투자·중개·유동화
8. 녹색금융과 기후위기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9.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0. 보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가. 녹색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나.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공사가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다. 외국자본의 차입

12. 녹색금융, 기후위기관련 정책 등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13.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의 부대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금공급 대상분야 또는 기업과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량 등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평가·공개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의 환경·사회 기준 등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환경·사회 등 관련 보호장치 마련 및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녹색기후기금의 인증기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과 외국 정부의 기후위기·녹색산업의 교류 증진을 촉진하고 해당 외국 정부의 녹색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

국 국민,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공사가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녹색금융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녹색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元本)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③ 정부는 녹색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보증할 수 있다.

④ 녹색금융채권의 발행액, 공사가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매입한 녹색금융채권의 현재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녹색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 ⑤ 공사는 녹색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금액을 초과하여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녹색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녹색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업무방법서) ① 공사는 제34조에 따른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업무방법서에는 제34조에 따른 자금의 대출방법·한도,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 방법, 투자와 보증의 방법·한도, 부대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

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한 후 업무계획을 승인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공사가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공사는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지 못한다.

제40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⑤ 공사의 회계처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한 결산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상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42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3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②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사장의 제청에 따라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45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46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7조(과태료)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한국녹색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4장 보칙

제4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녹색금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금융 촉진 지원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국회 보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 및 최초 자본금) ① 공사는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립한다.

② 공사 설립 시 최초 자본금으로 정부가 최소 1조원을 현금출자한다.

제3조(최초의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

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위원회)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수입의 일부를 한국녹색금융공사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에 따른 한국
녹색금융공사